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존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6.4.21)됨에 따라, 법 제2조제1의2호에 의한 외국통상조치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에 외국통상조치 추가 (제명 변경)

-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기존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과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로 제명 변경

나.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관련 별표 신설 (별표 2)

붙임 : 신규 조문 대비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 설 > < 신 설 >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과 <u>외국통상조치</u>의 범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과 <u>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외국통상조치</u>의 범위를 지정·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의2(외국통상조치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u> <u>[별표 2]</u> <u>외국통상조치의 범위(제2조의2 관련)</u> <table> <tr> <th>연번</th><th>조치명 및 세부설명</th></tr> <tr> <td>1</td><td>보편·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최혜국 관세율 또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초과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조치. 단,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각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구제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제외한다.</td></tr> <tr> <td>2</td><td>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또는 국익을 이유로 지정한 특정 품목(물질·시설·장비·부품·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포함한다)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자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개발·생산된 제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역외적용 조치.</td></tr> <tr> <td>3</td><td>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 다른 국가가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또는 환경 부담에 조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을 부과하거나, 역내 기업 및 그 공급망에 속한 국내의 협력 기업에 대해 환경, 인권 관리 실태 검증·실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기반으로 하는 일방적 통상 규제 조치.</td></tr> <tr> <td>4</td><td>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 다른 국가가 자국의 전략산업(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역내 생산·조립 비중 또는 특정 공급망 요건을 충족한 제품·기업에 한하여 차별적으로 재정적 지원(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우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제공하는 조치.</td></tr> </table>	연번	조치명 및 세부설명	1	보편·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최혜국 관세율 또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초과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조치. 단,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각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구제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제외한다.	2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또는 국익을 이유로 지정한 특정 품목(물질·시설·장비·부품·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포함한다)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자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개발·생산된 제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역외적용 조치.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 다른 국가가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또는 환경 부담에 조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을 부과하거나, 역내 기업 및 그 공급망에 속한 국내의 협력 기업에 대해 환경, 인권 관리 실태 검증·실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기반으로 하는 일방적 통상 규제 조치.	4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 다른 국가가 자국의 전략산업(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역내 생산·조립 비중 또는 특정 공급망 요건을 충족한 제품·기업에 한하여 차별적으로 재정적 지원(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우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제공하는 조치.
연번	조치명 및 세부설명										
1	보편·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최혜국 관세율 또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초과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조치. 단,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각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구제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제외한다.										
2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또는 국익을 이유로 지정한 특정 품목(물질·시설·장비·부품·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포함한다)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자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개발·생산된 제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역외적용 조치.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 다른 국가가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또는 환경 부담에 조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을 부과하거나, 역내 기업 및 그 공급망에 속한 국내의 협력 기업에 대해 환경, 인권 관리 실태 검증·실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기반으로 하는 일방적 통상 규제 조치.										
4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 다른 국가가 자국의 전략산업(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역내 생산·조립 비중 또는 특정 공급망 요건을 충족한 제품·기업에 한하여 차별적으로 재정적 지원(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우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제공하는 조치.										